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2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 박희승·김준혁·한정애

이훈기 • 이건태 • 서영교

어기구・강유정・이개호

정진욱 • 위성락 • 조계원

전진숙 · 정준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,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.

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, 미국, 유럽, 일본 등 해외 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 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.

한편,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 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.5%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 비지수도 113.74로 10년 전보다 21%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,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,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,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,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 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 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 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(안 제58조제5항). 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확인할"을 "확인하고 정비 의뢰자가 안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줄"로 한다.

2의2. 제2호에 따라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에는 차량의 연식,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수 있으며,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	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
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 ①	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	5
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제2호에 따라 부품 등을
	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
	도록 알려줄 때에는 차량의
	연식,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
	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,
	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
	유기간이 지난 차량의 경우
	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할
	<u> 것</u>
3.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	3
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	
상 여부를 <u>확인할</u> 것	확인하고 정비 의뢰자가
	안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
	<u>알려줄</u>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⑥ ~ ⑩ (생 략)	⑥ ~ ⑩ (현행과 같음)